

“김기자, 그 기사 좀 바꿔줘”, 형사처벌 받을까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6319 방송법 위반 판결 등 —

장윤미 법무법인 원앤원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2014년 4월 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사고 직후, 언론은 탑승자 수와 피해현황, 구조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KBS는 4월 21일 ‘KBS 뉴스 9’에서 ‘선박관제센터 운영…해수부 따로, 해경 따로’, ‘진도선박관제센터, 지켜보고도 감지 못 해’, ‘탈출 판단 선장에게 미뤄…관제센터 소극 대응’, ‘위도·경도 묻는 해경…놓친 시간 6분 더 있다’ 등 해경 비판 뉴스를 연달아 보도하였다.

그러자 청와대 홍보수석인 피고인은 4월 21일 보도 직후 KBS 보도국장 A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하였다. 당시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해당 녹취 전문은 전국언론노조가 2016년 6월 30일 공개해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하다).

(전 략)

피 고 인 :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아...

보도국장 : 아니, 이게 아니.

피 고 인 :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보도국장 : 아니, 이 선배.

피 고 인 : 자기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라, 소리 안 해 가지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보도국장 : 아니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뭐 해경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피 고 인 :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이쪽 거 한 열흘 뒤에 뭔지 밝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지고 다 작살을 내도.

보도국장 :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피 고 인 : 그러나 지금은 멍쳐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은.

보도국장 : 제 얘기 들어보세요.

(후 략)

이러한 식의 대화는 대략 7분 정도 이어졌다. 당시 녹취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라고 항의를 하다가도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XX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봐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식의 대화를 이어갔다.

나. 그로부터 9일 뒤 KBS는 2014년 4월 30일 ‘KBS 뉴스 9’에서 ‘사고 초기 해경, ‘언딘’ 때문에 군 투입 못해’, ‘둘째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해경, 통제 인정 “초기 혼선 초래 책임 통감”’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방송 직후 피고인은 다시 보도국장 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5분 정도 재차 항의하였다. 당시 통화에서 피고인은 9시 뉴스에 보도된 리포트가 이후 뉴스 프로그램에도 방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리포트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 략)

보도국장 : 저기 뉴스라인 쪽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피 고 인 : 고저 좀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요거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보도국장 :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피 고 인 : 그래, 한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고 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

보도국장 : 하여간 어렵네. 어려워.

피 고 인 :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

보도국장 : 편하게 들어가세요.

피 고 인 :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잘~ 나 여기 출입처잖아. 전화 좀 해줘.

(후 략)

다. 음소와 압박, 회유와 항의가 주된 내용이었던 이 두 통의 전화통화로 피고인은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4조 제2항으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되었다.¹⁾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법조항으로 실제 기소까지 이루어지지자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었다.

1) 이지선 (2017. 12. 20).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기소...첫 사례. (MBC). URL: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477032_31369.html

2. 대상판결

가. 주된 쟁점 사안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①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보도국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②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였고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지위가 없었다 ③ KBS 보도국장은 방송편성책임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방송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통화 이후 실제 방송편성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⑤ 정상적인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1, 2심 재판부 전부,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었던 경우에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방송편성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홍보수석이 속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면권자이고, KBS 사장이 보도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BS 보도국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 또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피고인에게 우월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려는 의도 여부와 상관 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적인 관계에서 한 부탁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KBS 보도국장이 방송편성책임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상 KBS 방송편성책임자가 편성본부장이기는 하지만, 보도프로그램의 내용, 순서 등에 있어 보도국장에게 편성을 위임하고 있고, 보도국장이 매일 편집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송할 보도물을 선정하는 등 뉴스편성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들어 보도국장이 뉴스편성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방송편성책임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해서 직제를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도국장 업무의 실질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정당한 공보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방송이 나가자마자 즉시 방송국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고, 방송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나. '관행'이라는 이름의 언론 간섭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홍보수석의 본래 업무가 기사와 관련해 시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방송사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정하고 부탁하는 일이며, 이러한 행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언론 업무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피고인은 방송법 제정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현직 의원인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이용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안이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오히려 이같은 변론을 펼친 것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1심 법원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고,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처벌 조항까지 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가 전무하였던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해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이를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한 '방송사에 사정하고 부탁한 것일 뿐이다', '오보를 신속하게 정정할 방법이 없어 한 행동'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홍보수석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방송편성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 접촉을 통해 방송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하였다. 더구나 이 법률조항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된 것이라고 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니 사법적 판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야말로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다.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상실이 되지는 않았는데, 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방송편성이 변경되지는 않은 점, '구조작업이 완료된 후 해경이나 정부를 비판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통화 내용으로 보아 해경의 구조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비판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최종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3. 결 어

정당, 정부부처, 검찰, 경찰 등 주요 출입처의 출입기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언론 환경 속에서 공보국, 홍보실, 대변인실 등 그 명칭을 막론하고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자에게 기사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첫 사례로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송법에는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신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과 관련한 법률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신문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신문 편집권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도 방송편성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신문편집에 관하여 간섭한 자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의 원칙 위배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의 영향력이 신문에 비해 크다는 점, 일정한 논조와 경향의 추구가 보장되는 신문과 달리, 방송은 중립성과 다양성의 원리에 기속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신문, 방송할 것 없이 뉴스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소비되는 현 상황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입법의 불비로 보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